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금속·비금속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부지확보와 금속 및 비금속 관로의 지하매설 등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성능검사대행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할 필요가 있고(별표11),

나. 공간영상도화업을 등록할 때에는 도화기가 필요한 반면, 측
량성과 검증기관은 성능이 낮은 해석도화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측량성과 검증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존재,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장비기준을 해석도화기로 한정된 것을
도화기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별표 4),

다. 측량업 관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40조, 별표1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중 “법 제46조제2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장비란 제4호 중 “해석도화기”를 “도화기”로 한다.

별표 11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 및 장비 기준 중 관로탐지기 검사시설 외에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

별표 13 제2호자목 중 “법 제46조제2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법 제93조제3항”을 “법 제9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 ----- ----- -----. ② (현행과 같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인력·장비 보유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기 술 인 력	장 비
1. 특급기술인: 2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3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3명 이상	1. GPS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스테이션(1급): 1대 이상 3. 레벨(1급, 인바표척 포함): 1대 이상 4. 도화기: 1대 이상 5. 출력장치: 1대 이상 6.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7. 수치지도 입력·출력 및 GPS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1식

비 고

1. 기술인력 중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
2.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고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2명 이상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 기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 기사 1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자기 소유이거나 2년 이상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8조 관련)

구 분	시 설 및 장 비	기 술 인 력
일반 성능검사대행자	콜리미터 시설 1조 이상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	1. 금속 관로탐지기 검사 시설 1식 이상 2. 비금속 관로 탐지기 검사시설 1식 이상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 고

1. 콜리미터 시설의 설치 장소는 진동 등의 영향으로부터 성능 측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한다.
2. 기술인력 중 1명은 측량기술자(별표 5의 비고 라목에 따른 측량 분야 기능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3.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상위 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5. 일반성능검사대행자와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대행자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6. 외국인이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8. 시설 및 장비 기준 중 관로탐지기 검사시설 외에는 자기 소유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상에 어긋나는 측량성상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다. 삭제 <2021. 2. 9.>				
라. 삭제 <2021. 2. 9.>				
마. 삭제 <2021. 2. 9.>				
바. 삭제 <2021. 2. 9.>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 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 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 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타. 삭제 <2021. 2. 9.>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 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 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 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 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 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5항을 위 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 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 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2항	30	6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111조	25	50	100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1항제16호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3480